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전지법 2010. 2. 25. 2009고단2786, 4126, 2009고정2259]

【판시사항】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시국선언문(제1, 2차)을 발표하고 시 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 제 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행위가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의 위배 또는 직무기강의 저해에 해 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 피고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3] 기자회견이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해산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소속 교사인 피고인들이 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제1차) 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발·징계방침 철회 및 대통령의 자세전환을 요구하는 내용(제2차)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는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익에 반한다거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직무기강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어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2] 피고인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20여 명이 기자회견 형식의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옥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은 위 법률이 정하는 '집회'이므로 위 법률 제6조에 따른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실내에서의 기자회견이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이상 옥외의 기자회견에 대하여 이처럼 다소간의 법적 제한을 가한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3]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미신고 옥외집회의 해산명령을 받고도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위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집회는 참가인원이 20여 명에 불과하고, 구호를 외친 것 외에 아무런 폭력이나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았으며, 시위대가 인도를 벗어나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도 않은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참가자들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을 들어 해산명령을 하였으니 그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없고, 위법한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65조, 제66조 제1항, 제8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육기본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 제6조 제1항, 제14조 제4항, 헌법 제7조 제2항, 제21조 제1항, 제31조 제4항

-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제2항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0조,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5호, 헌법 제21조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공1991, 1514),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공1992, 1078),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공1992, 14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공1998상, 168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공2005상, 783),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공2006상, 756),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451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2005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6) /
- [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공2008하, 1105),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공2009하, 1367) /
- [3]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공2001하, 2417),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 전원재 판부 결정(헌공86, 978)

【전문】

【피고인】피고인1외2인

【검사】이건령외1인

【변 호 인】 변호사 문현웅

【주문】

1

- 1. 피고인 1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2.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4.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점 및 해산명령 위반에 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각 무죄.
- 5. 피고인 2, 피고인 3은 각 무죄.
- 6.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